

각자의 빛 함께 그리는 미래

2026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우리의 적극행정이 더 좋은 경남교육을 만듭니다.

2026. 2.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정책기획관]

목 차

I. 적극행정 추진현황	1
1. 추진 근거	1
2. 추진 배경	1
3. 2025년 주요 추진성과	2
4. 반성 및 평가	3
II. 2026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4
1. 정의 및 유형	4
2. 2026년 적극행정 추진 방향	5
III.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6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관리	6
2.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8
3.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9
4.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9
IV. 소극행정 예방 및 효과	14
1. 소극행정 엄정 조치 및 점검 강화	14
2.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15

V.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6

- 1.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16
-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19
- 3. 조직성과 평가 시 적극행정 노력도 반영 21

VI.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22

- 1.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22
- 2. 사전컨설팅 활성화 23
- 3.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24
- 4.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26

VII. 도민체감 성과 확산 및 소통 강화 30

- 1.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소통 강화 30
- 2.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32
- 3.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확산 34

VIII. 향후 계획 35

- [붙임 1] 2026년 적극행정 과제별 추진 부서 및 일정 36
- [붙임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방법 37

[각종서식] 서식1 ~ 서식7 40

1

추진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추진 배경

□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필요

- AI 기반 학습도구와 학습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AI 기술이 교육 현장에 적용되면서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데이터 기반 학습 관리 및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등 적극적 정책 추진 필요
- 급격한 미래사회로의 변화는 교육정책 환경을 새로운 위기로 인식 하게 하며, 이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 등 적극행정 실천 요구

□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교육의 역할 확대 요구

-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지원 체계 구축과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 중심 교육정책 추진 필요
- 교육특구 지정과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기반 조성 등 지역교육 혁신 기반 구축

□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공교육의 변화 필요

- 증가하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가계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공교육 내실화 및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
- 학생의 경제·교육·정서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적극행정 운영지원 TF 구성 및 운영

- 적극행정 운영체계 내실화를 위해 '적극행정 운영지원 TF' 최초 구성 및 운영(2025. 7.~11.)
- 적극행정 운영 현황 분석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발굴로 2026년 적극행정 추진 개선안 마련

□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및 관리

- 2025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6과제) 및 추진 상황 점검(연 1회)

연번	부서	과제명	비고
1	홍보담당관	눈과 귀로 듣는, 현장 중심 정책 홍보 전략	
2	교육활동보호담당관	학습권·교권 모두를 보호하는 갈등 조정 시스템 구축·운영	
3	유아특수교육과	유치원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 운영	
4	초등교육과	지속 가능한 공공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맞춤형 돌봄센터 운영	사전 발굴
5	교육복지과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전 발굴
6	총무과	경남교육역사 기록의 공백을 메우다 -폐교 기록화 사업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단체)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연번	우수사례명	등급
1	작은학교의 반격 '돌아온 학생, 늘어난 학급, 함께한 마을'	최우수
2	차량으로 꽂 막힌 도서관, 문화·예술의 향만으로 거듭나다!	우수
3	'함께 만든 변화, 달라진 통학길' 고성교육지원청이 앞장서고 고성군이 밀어주어 고등학교 통학길이 달라진다!	장려

- 포상금 지급: 최우수 200만원, 우수 100만원, 장려 50만원
- 주공적자에게 등급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개인) 선발: 2026년 3월 완료 예정

□ 도민 적극행정모니터단 운영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도민 적극행정 모니터단' 53명 구성 및 운영
 -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은 학생, 학부모, 일반 도민으로 구성
 -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 심사(예선 2차 심사)

4 반성 및 평가

□ 우수한 점

- 적극행정 운영체계 강화
 - TF를 통해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적극행정 정책 추진 기반을 점검
 - TF 운영 결과를 향후 정책 개선 및 실행 체계 마련에 활용 가능
- 도민 소통·참여 확대
 - 도민 적극행정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및 위촉장 수여를 통해 활동 참여 의지 고취
 - 모니터단 대상 특강을 실시하여 적극행정 이해도 제고 및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 확대

□ 보완 필요사항

- 적극행정 홍보 및 참여 유도 필요
 - 모든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 확대 등 홍보 강화
 -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규제나 법령 등으로 업무 추진이 곤란할 경우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TF 의견의 정책적 연계 강화 필요
 -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와 의견이 정책 설계와 실행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의 소통 및 협업 강화

□ 적극행정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

□ 적극행정 유형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비전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목표

경남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추진
전략
·
추진
과제

3대 추진전략

5개 추진과제 · 17개 세부과제

적극행정
활성화

1.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 ①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관리 **확대**
- ②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 ③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 ④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2.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① 소극행정 엄정 조치 및 점검 강화
- ②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적극행정
지원

3.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변경**
-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변경**
- ③ 조직성과 평가 시 적극행정 노력도 반영 **확대**

4.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①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 ② 사전컨설팅 활성화
- ③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④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적극행정
확산

5. 도민체감 성과 확산 및 소통 강화

- ①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소통 강화
- ②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 ③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확산 **강화**

□ 선정 개요

- (대상) 본청 부서 및 교육지원청 (2026년부터 대상 확대)
- (시기) 2026. 3. ~ 12.
- (목적)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성과 창출 및 다양한 주제의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선정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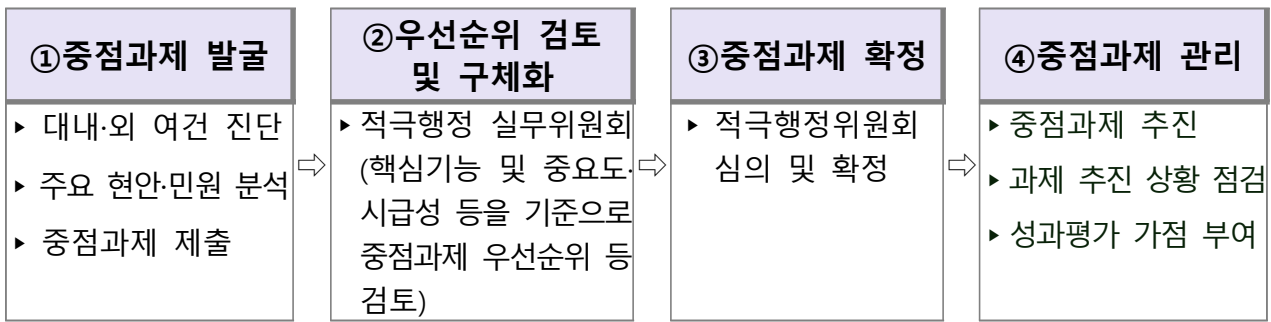
- ① **(관행극복 및 도전·창의)** 기존의 업무관행을 스스로 탈피하여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업무효율을 제고한 경우
- ② **(적극법제 및 해석)**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이나 공백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극복한 경우
- ③ **(선제적 조치)** 새로운 행정수요나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정책을 발굴·추진한 경우
- ④ **(기타)** 국민의 불편사항 해결 및 주요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했거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 등을 현명하게 대처·해결한 경우

○ (선정 기준)

-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교육수요자 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수요자 체감도가 높은 과제
- 중장기적 과제의 경우 연내 달성 가능한 세부목표를 선정
- ‘적극행정’ 범주를 확대하는 다양한 주제의 중점과제 발굴 노력

- | | |
|--------------------------------|----------------------|
| □ 규제개혁을 통한 문제해결 과제 | □ 민원서비스 개선 과제 |
| □ 사회적 ‘교육’ 이슈 관련 과제 | □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 □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 □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
| □ 업무경감, 평범(소소)하지만 가치있는 과제 | |
| □ 기존 업무 추진 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 |

□ 선정 절차



○ (중점과제 발굴)

- 부서(본청)·기관(교육지원청)별 중점과제 1개 필수 제출
- 우리교육청 특성 및 대내·외 여건 진단, 주요 현안·민원 분석
- 주요업무계획, 도의회 주요업무보고, 교육감 신년사 등에서 언급된 과제 등 우리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과제 발굴
- 기관 및 지역 특색을 살린 중점과제 발굴(교육지원청)

○ (우선순위 검토 및 구체화)

- '적극행정 실무위원회'를 통해 핵심기능 및 중요도·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부서별 중점과제 우선순위 등 검토

○ (중점과제 확정)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서별 과제 7개 내외·기관별 과제 5개 내외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최종 결정

□ 적극행정 중점과제 관리

○ 적극행정 중점과제 이행 실적 점검(연 1회)

○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 추진 지원

- 적극행정 법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감사 등으로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

○ 적극행정 중점과제 참여 유도를 위한 성과평가 및 심사 가점 부여

- (성과평가 개인 가점)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업무 담당자 및 담당 장학관·사무관(본청), 담당 팀장(교육지원청)의 성과평가에 개인 가점(0.3점)* 부여

※ 세부사항은 2026년 성과평가 계획에 따름

조직문화 측면의 적극행정 장애요인

- 청내 여러 부서가 연관된 복합 업무, 직제 상 규정되지 않은 신규업무 발생 시 부서 간 업무회피로 인하여 행정 지연 및 효율성 저하
- 조직 구성원의 입직경로가 다양화되고 연령층도 폭넓어지면서 직급(또는 직렬) 간, 연령대 간 일하는 방식과 소통과정에 갈등 발생

□ 참여와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정책기획관)

- 기관·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소극행정 예방 및 부서 간 칸막이 해소
 -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사무에 대한 신속한 업무 조정으로 소극행정 혁파 및 행정서비스 수요자 만족도 제고

□ 학교통합지원 중심으로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학교혁신과)

- 학교통합지원 협업체제 구축으로 학교 지원 중심 교육행정력 향상
 - 학교지원의 방향을 단일사업(업무) 중심에서 협력적 통합지원의 형태로 전환

□ 즐거운 일터 만들기를 통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총무과)

- 직장내 활기를 불어넣는 밝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 청사 내 수목관리, 주차관리, 화훼관리, 급식환경·냉난방 개선 등
 - 청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관람·체험 기회 제공
-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소통기회 확대
 - 직장 동호회 다양성 및 자율성 제고
 - 세대·직종 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 마련
-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창의적 업무역량 육성 기회 제공
 - 다양한 주제로 자기 계발 기회 제공
 - 매월 분야별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주제로 직장교육 실시

□ 지방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경비 지원(총무과)

- 지방공무원 학습기회 확대 부여로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기여

-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비 지원(1인당 연 250,000원 이내)

3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 (직장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실시
 - (본청) 본청 직원 대상 직장교육 실시
 - (본청 외 전 학교·기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온 on*」에서 제공하는 표준강의안 및 적극행정 강사단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직장교육 실시
 - * 적극행정 교육 자료 및 강사 섭외 절차 등 참고
 - (원격교육) 전 학교(기관)에서는 직장교육 외에도 전 직원이 적극행정 원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내 및 수강 독려
 -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등에 개설(예정)된 사이버 교육과정(e-러닝) 이수 독려
 - (교육훈련기관 교과 편성) 경남교육연수원에서는 신규 공무원 및 승진자(교장, 교감 신규 관리자 및 5급 승진심사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내용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설
- ※ 교육훈련기관 교과 시작전후를 활용하여, 적극행정 교육 홍보영상 시청 협조
(「적극행정 온 on」 홈페이지 자료 활용)

4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적극행정위원회 개요

- (개념) 적극행정에 필요한 업무처리 방향 등을 제시하거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사결정 지원기구
- (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
- (요건)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하거나, 자체감사 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감사 내용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경우 등 회의 개최 및 심의

- **(주요 역할)** 학생 건강·안전, 장기 미해결 과제 등 교육수요자 영향이 큰 현안 사안은 신속히 상정하여 논의
 - 특히, 규제개선, 이해·갈등 조정, 신산업 인·허가 등 개인·부서 단위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조속히 상정하여 선제적 문제 해결 추진
 - 법리적 해석뿐만 아니라 민간위원과 함께 합목적적 판단까지 가능하므로 교육정책 수혜자(학생, 학부모, 도민) 관점에서 해결 방안 도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대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

1.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 구성)** 총 10명 / 내부위원(당연직) 4명^(감사관 필수), 외부위원(위촉직) 6명
 - 위원장(부교육감), 적극행정 책임관(정책기획관), 간사(적극행정 담당 장학관)
 - 임기: 2년(2024. 8. 1. ~ 2026. 7. 31.) ※ 2026. 7. 위원회 구성 예정
- **(회의방식)** 대면회의 원칙,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영상회의 등 가능
- **(안전 검토)** 위원회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이 사전에 상정 안전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신중히 검토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제한 사유

- ☑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 소관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 ☑ 상정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심의·의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필요시 안건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심의결과 공개)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안건명, 주요내용 등)을 누리집 및 내부 업무망 등에 공개

※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해당 시점에서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가능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흐름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요청

- ▶ 의견제시(공무원→적극추진)
- ▶ 면책건의(공무원→적극추진→공무원→감사원)
*적극행정 면책건의서 발급
- ▶ 사전컨설팅 자문(자체감사기구의 장→적극추진)
- ▶ 기타 심의사항
 - 실행 계획 확정·실적 점검, 우수공무원·사례 선발, 인센티브 결정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상정예정 안건검토(적극행정 책임관)

- ▶ 상정안건의 시급성·중요성 등 신중검토
- ▶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검토 후 신속하게 회의 개의
- ▶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안건은 안건 적정성 검토서를 위원회에 제출

후속조치(적극행정 전담부서)

- ▶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공개
(우리교육청 누리집, 내부 업무망 온 등)

의결시 면책 효력

- ▶ 적극추진 제시 의견대로 업무 처리한 경우 효력
- ▶ 자체감사 징계요구 등 면책, 감사원에 징계요구 등 면책건의, 징계의결 등 면제
- ▶ 기타 적극행정 심의안건 확정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개최

- ▶ 현안 시급성, 특성에 따라 회의 방식은 자율적으로 운영
(대면회의/영상회의/서면회의 등)
- ▶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요건 준수
- ▶ 필요 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간사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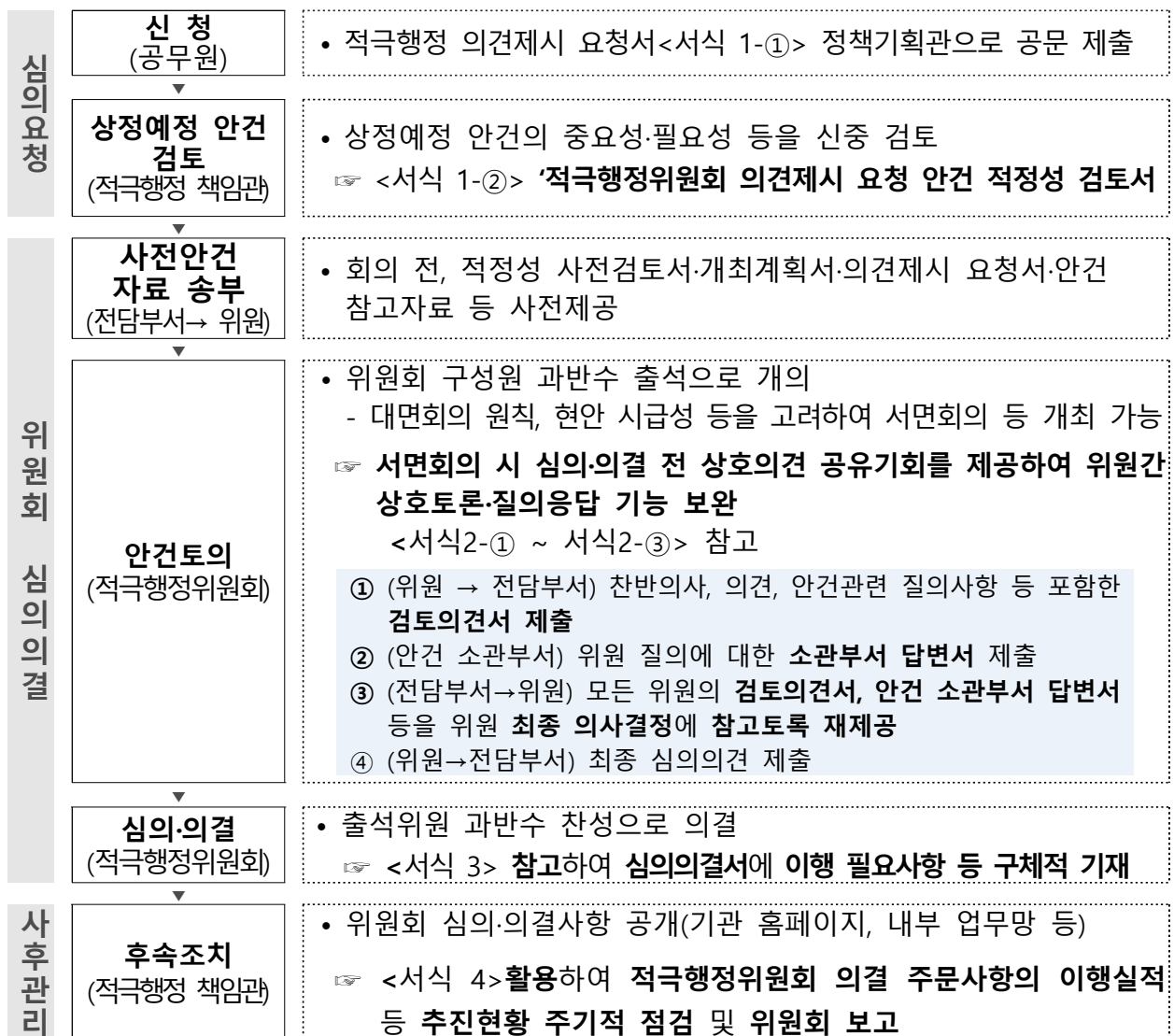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활성화

- (개념)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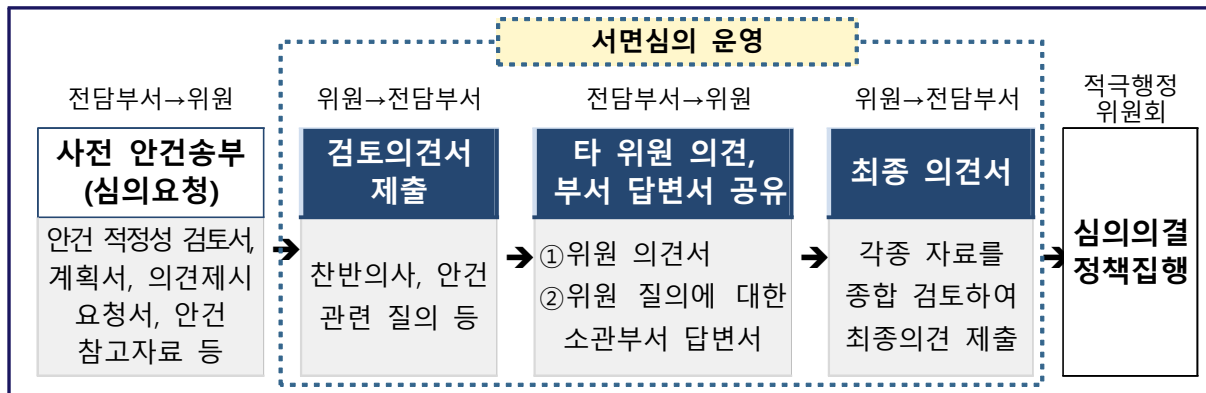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제도

- (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 (상정예정 안전 검토) 적극행정 책임관이 안전 적정성 검토서(서식1-②)를 통해 안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책임성 제고
- (회의방식) 대면회의 원칙, 불가피하게 서면회의 개최 시, 위원 검토의견서 및 관련부서 질의·응답 등 상호 토의기능 보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운영 흐름도



“의견제시” 서면심의 절차도



□ 적극행정위원회 효력

-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 면제
 - ※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 인정 안됨
-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에 대한 면책 건의

□ 적극행정위원회 공정성 및 관리 강화

- (심의기능 보완) 심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 전 안전에 대한 질의 및 관련 부서 의견 사전 조회 등 상호의견 공유 기회 확대를 통하여 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제출
- (책임성 제고) 적극행정 의견제시 요청 시 적극행정 책임관이 안전 적정성 검토서(서식-㉔)를 통해 안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위원회에 제출
- (사후관리 강화) 위원회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소관부서에서 이행 필요 사항 검토 및 이행 실적 주기적 점검 등

소극행정 엄정 조치 및 점검 강화

□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되는 행위

□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 기준

분류	판단기준
적당편의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탁상행정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업무해태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조직 이기주의적인 행태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

- (소극행정 적발사항 엄벌) 소극행정 자체점검 시 적발된 비위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
 - 고의적, 상습적(2회 이상) 사례에 대하여 엄정 조치
 -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를 고려,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다. 부작위·직무태만(바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징계처분 시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 가산

- 소극행정에 따른 징계 처분 시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 6개월 가산 적용

▶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경우 비위 관련 감독자도 문책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기금의 기준) 제2항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승진 제한기한 6개월 가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

2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 소극행정 상시 민원 처리

- (감사관) 국민신문고 연계하여 누리집 내 '소극행정 신고 센터' 접수 민원 처리
 - 소극행정 신고 접수 시 감사관에서 조사·처리 후 결과 통보
 - 감사관은 조사 후 소극행정 민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 처분 취소·변경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등 조치
- (각 부서) 소극행정이 아닌 단순 민원은 사업부서에서 처리

□ 소극행정 현장점검 및 인식 제고

-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소극행정 행태 자체점검
 - 점검부서: 본청 전 부서, 감사관 및 교육지원청 감사업무담당 부서
 - 시기: 수시(별도 계획에 따라 복무감사와 병행 실시)
 - 점검 결과 조치
 - * 소극행정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 법령·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제도 개선
- 점검결과 반영
 - 소극행정으로 민원 발생 시 원인 확인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전 부서)
-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및 처분 사례 전파 →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청렴 연수 등 각종 연수 시 소극행정 사례 안내(감사관)
- 소극행정 이행 점검 실적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결과 공유
 - 소극행정 점검 결과 적극행정위원회에 보고

□ 선발 개요

- (선발 대상)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 개인 또는 팀 자격으로 사례 제출 가능
(팀으로 제출 시 주공적자 1명, 부공적자 2명 이내로 제한)
 - ※ 주공적자는 제출 사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를 선정하여 제출
- (선발 시기 및 공적기간)

구분	공적기간	선발기간
상반기	2025. 7.~2026. 6.	2026. 6.~2026. 9.
하반기	2026. 1.~2026. 12.	2026. 12.~2027. 3.

- (선발 인원) 반기별 6명 내외(총 12명 내외)

제외 대상

- ① 휴직·직위해제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 ②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승진제한기간이 없는 불문경고의 경우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제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 없이 추천 제외(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③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 처분된 이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⑤ 기 수상사례 및 기존 유사사례의 일부 내용을 단순 수정·변경한 경우
 - * 단, 과거 사례를 추가 개선하여 새로운 성과로 인정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
- ⑥ 해당 사례로 예산성과금 및 제안제도에서 과거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우대등급) 3단계(최우수/우수/장려)로, 성과의 우수성(중요도, 난이도, 파급효과 등), 성과창출 기여도·노력도, 대외적 위상제고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최우수, 우수, 장려로 선정된 사례는 우대등급에 따른 포상금 지급
 - ※ 포상금 금액은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계획에 따라 확정·지급함
 - ※ 본선 진출 사례 중 최종 선발되지는 않았더라도, 기존 관행 탈피 및 새로운 영역 개척 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례로 판단될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름다운 도전'으로 별도 선정하고, 소정의 포상금 지급

- (선발절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및 도민 적극행정모니터단의 예선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의결로 선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절차도

① 우수사례 선발계획 수립	② 사례 접수 및 사전검증	③ 예선심사	④ 본선심사	⑤ 후속조치
▶ 우수 사례 선발 대상, 기준, 절차 등 계획 수립	▶ 사례 접수 - 각 기관(학교) 우수사례 제출 ▶ 사전 검증 - 결격사유 조회 - 누리집 공개검증	▶ [1차 예선 심사] -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실무 심사 - 우수사례 후보 선정 (2배수 이내) ▶ [2차 예선 심사] - 도민적극행정모니터단 심사의견 제출	▶ 적극행정위원회 - 최종 선정 - 우수사례 등급 (최우수/우수/장려) 결정 - 아름다운도전 결정	▶ 우수사례 공유·적극행정 문화 확산 ▶ 인센티브 확정부여 ▶ 포상금 지급 ▶ 교육부 경진대회 출품

- (심사기준) 공공의 이익 기여도(40%),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30%), 과제의 중요도·난이도(20%), 확산 가능성(10%)을 종합적으로 심사
 -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협업,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
 - 단순히 실적과 능력이 우수하거나 친절·성실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극행정 사례’ 중심으로 선발

제외 사례

- 통상적인 업무, 단순업무, 적극행정 관련 기 제출 사례
- 본청에서 안내한 지침, 계획, 매뉴얼을 기관(학교)에서 보완·확산한 사례
- 타 기관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일상적인 사례, 업무를 열심히 한 사례

- (심사지표 및 평가 기준)

심사지표	배점	심사내용
공공의 이익 기여도	40	■ 교육수요자 및 도민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편의 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하거나 재정 절감 등 공공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평가(간접적 기여도 포함)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30	■ 새로운 정책 발굴, 이해조정 및 협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도를 평가 ■ 해당 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전문 지식·경험 등을 활용한 정도를 평가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20	■ 교육정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 ■ 관련업무나 민원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 또는 열악한 정책 환경 등을 평가
확산 가능성	10	■ 동 사례에서 나타난 적극행정 노력이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계	100	

- (단계별 심사항목 배점 기준)

구 분	지표별			
	공공의 이익 기여도 (40)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 ·전문성(30)	과제의 중요도· 난이도(20)	확산가능성 (10)
매우우수	33~40	25~30	17~20	9~10
우수	25~32	19~24	13~16	7~8
보통	17~24	13~18	9~12	5~6
미흡	9~16	7~12	5~8	3~4
매우미흡	1~8	1~6	1~4	1~2

※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산출한 후 등급 기준에 맞춰 결정

○ (심사방법)

- (1차 예선 심사) 적극행정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수사례 후보^{2배수} 내외 선정(※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후보 선정 가능)
 - ▶ (가점 부여) 1차 예선 심사 시 가점^(0~5점) 부여
 - ① 협업 여부
 - 협업기관이 공동으로 출품한 경우에 한해 가점 인정하며, 협업기관은 경남교육청 소속 기관(학교)에 한함
 - 단순 부분 협업이 아닌, 계획 수립부터 모든 단계에서의 협업 사례만 제출 (계획서, 결과 보고서 등 입증 자료 제출 필요)
 -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도민추천 사례
 - ▶ 우수사례 선발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필요 시 관련 부서 의견 사전 조회 실시(적극행정 해당 여부, 확산 가능성 등)
- (2차 예선 심사) 도민 적극행정 모니터단에서 우수사례 후보^{1차 예선 결과} 심사 및 의견 제출
- (본선 심사) 각 사례별로 주공적자 1명이 적극행정위원회에 출석하여 3분 내외의 사례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사 평가
- (최종 등급 결정)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 우수 사례 및 우수공무원(주공적자 1명) 최종 결정
 - ▶ 우대 등급(최우수/우수/장려) 및 인원 결정
 - ▶ ‘아름다운 도전’ 선정

□ 중앙부처(법정부·교육부) 경진대회 출품

○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

- (규모) 교육부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20명 내외 선발
- (시기) 반기별로 경진대회 개최를 원칙으로 총 2회 개최(6, 10월)
- 교육청 자체 선발된 건 중 추천하되, 추천 건수 초과 시 상위 등급순으로 추천
- 부득이 자체 선발을 거치지 못하였으나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한 업무추진 고성과자가 있는 경우, (교육부)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또는 (법정부)공적심사 후 추천 가능

※ 교육부·법정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을 경우, 자체 선발에서 우수·장려 등급이 있거나 자체 선발 없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로 출품하였더라도 최우수 등급과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동일하게 부여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변경

□ 인센티브 부여 기준

-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발된 경우 주공적자 1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우대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확정·부여

인센티브 유형

유형		정의 및 대상	부여시기	참고
인사상	성과급 최고등급	성과상여금(6급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 및 교원) 및 성과연봉(5급상당 이상) "최고등급" 부여	2027년 성과급 지급 시 (평가대상 기간 2026. 1. ~ 12.)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음
	교육훈련* 우선선발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로 우선 선발 또는 가점 부여(모든 직급)	우수공무원 선발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 본인 희망 시	
	전보 가점 (2점)	전보희망서 작성 시 가점 부여(6급 이하 교육행정직)	우수공무원 선발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 본인 희망 시	교육전문직원 및 교원은 해당 없음
교육감 상장		교육감 상장을 수여하고 인사기록카드에 수상 기록	우수사례 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수 및 교육 훈련에 한하며, 우선선발 세부 기준은 도교육청 사업부서 및 직속기관의 자체 계획에 의함

□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기준

- 성과(우대등급)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
- 전체 우수공무원의 60% 이상에 대해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2026년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목표 >

총 인센티브	파격적 인센티브
12명	12명(100%)

우대 등급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 등 부여 기준

우대등급	인사상 인센티브			④교육감 상장
	파격적 인센티브	기타 인사상 인센티브		
	①성과급 최고등급 (모든직급)	②교육훈련 우선선발 (모든직급)	③전보 가점 (6급이하 교육행정직)	
최우수	●	●	●	●
우수	●	●		●
장려	●			●

□ 인센티브 부여 절차

- (우수공무원 선정) 전담부서(정책기획관)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우대등급 결정 결과 통보
- (인센티브 신청 및 확정·부여)
 - 성과급 최고등급: 각 기관의 인사부서는 성과급 부여시기 도래 시 즉시 확정·부여하고,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
 - 교육훈련 우선선발: 도교육청 사업부서 및 직속기관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선선발 기준 마련, 본인 희망 시(우수공무원 선발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 우대등급에 따라 확정·부여하고,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
 - 전보 가점: 인사부서(총무과)에서는 본인 희망 시(우수공무원 선발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 확정·부여하고,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
(→ 인센티브 확정·부여 후 1개월 이내 전담부서에 공문 시행)

- (교육감 상장 수여)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와 함께 상장을 수여하고, 인사기록카드 [포상/서훈] 정보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상 기록
- (결과점검) 전담부서(정책기획관)는 인센티브 부여 결과를 확인·점검

3 조직성과 평가 시 적극행정 노력도 반영 확대

□ 적극행정과 성과평가 연계

- 적극행정 중점과제 참여 유도를 위한 개인 평가 가점 부여
 - (중점과제 발굴)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결과 반영
 -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담당자에게 개인 평가 가점 0.3점 부여

구분	가감점 항목	기 준	점수 기준
가점	적극행정	■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업무담당자 및 담당 장학관·사무관(본청), 담당 팀장(교육지원청)	0.3점

※ 세부 사항은 2026년도 성과평가 계획에 따름

□ 실무자의 정책결정의 부담 완화

- (제도 취지) 기관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아니 됨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4조제2항,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 (운영 방향) 위임전결 규정에 기관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의 정책결정 부담 완화
 -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큰 민원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을 때에는 전결처리 예외 적용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

- 제7조(전결 처리의 예외) ① 제5조 별표의 전결 처리 사항 중 그 결과(영향)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의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명기하여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결정할 수 있다.
-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도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컨설팅감사의 개요

-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개정: 2020. 5. 7. 발령
- (정의)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책임 면제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및 처리

- 신청 주체: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신청
 - ※ 공무원 개인 자격으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서식5(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17호서식)을 갖추어 문서로 신청
 - ※ 본청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 감사관으로 직접 신청
 -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직접 신청
 - ※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부서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감사관으로 신청
- 결과 통보: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검토 기한 연장 가능
-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우리교육청(감사관)으로 신청한 내용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으로 사전컨설팅 신청 (감사원 절차에 따름)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제한 요건

-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나 소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책임회피 수단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관에서 충분한 검토(관계기관 의견 등)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신청 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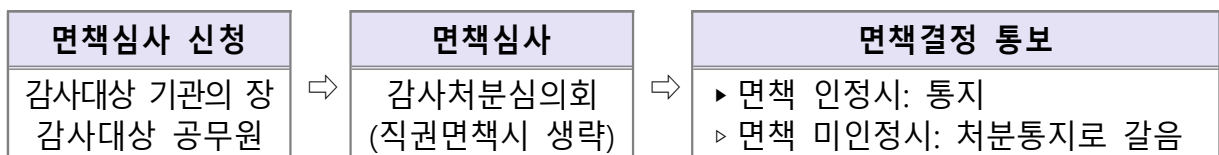
□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방안

-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관련 절차와 방법 안내
 - 사전 컨설팅 요청 안내 공문: 관내 기관(학교) 대상 배포
- 사전컨설팅 감사 우수사례 홍보

3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개요

- (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16조
- (정의)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
- (운영절차)



* (적극행정 면책 기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 하였을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기간 중) 현장면책 처리 절차 간소화

- (요청) 수감자의 서류 제출 생략
- (검토) 감사관이 ‘현장면책 검토서’를 작성하고 감사반 내부 회의에서 면책여부를 자체 판단하여 직권면책 처리
- (고지) 감사마감회의 자료 반영(‘현장면책’ 현황)
- (통보) 면책결과 통보 공문 간소화(감사반장 전결 처리)

□ (감사종료 후) 신청면책 처리 절차 간소화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서식6의 자체감사 규정 반영 및 신청면책 신청 서식 누리집 탑재
- 감사수감기관 공문 통보 서식 간소화

□ 면책 적용 적극 검토

- 형식적·소극적 판단을 지양하고, 공익성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책 적용을 적극 검토

□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홍보

- 감사관 대상 적극행정 면책제도 처리 절차 자체 연수 실시
- 감사장 내 적극행정 면책 안내문 부착 및 현장 안내
- 감사마감회의에 반영한 ‘현장면책’ 현황을 감사처분심의회에서 공유
- (인센티브)적극행정면책 유공 공무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 적극행정 면책 사례 공유로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감사원/적극행정 길라잡이(<https://www.bai.go.kr/proactive>)/적극행정면책 제도

- ❖ 업무수행으로 인한 직원 피소 시 '공무원 책임보험' 적용가능 여부 우선검토하여 활용하고, 약관 상 보장받지 못한 경우는 적극행정 소송지원 절차에 따라 심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 동일한 보험사고로 '적극행정 소송지원'과 '책임보험 보험금'의 중복 수령 금지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소송지원금을 반납 (책임보험 수령금 반납이 아님)

□ 공무원 책임보험 운영 현황

○ 교원보호공제 운영(교육활동보호담당관)

- 관내 국·공·사립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 및 피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 운영
- 교육활동과 관련한 배상책임, 민·형사상 소송비용, 재산상 피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보호 서비스 및 분쟁조정 지원 등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 제공
- ※ 세부 보장 내용과 적용 기준 및 보장 한도는 2026년 교원보호 공제 운영 계획에 따름

○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운영(총무과)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송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을 운영
- 대상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민·형사상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 관련 비용 지원
- ※ 세부 보장 내용과 적용 기준 및 보장 한도는 2026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운영 계획에 따름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의 결과로 소속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징계·소송 등 요구된 경우 지원을 해야 함
 - 징계의결이 요구 된 경우, 징계 면제 요건 충족 여부 소명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지원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4항

※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2024. 2. 15. 제정)^(정책기획관)

- (보상 범위 및 한도)

구 분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보장 내용	
지원대상		적극행정을 수행한 모든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지원내용		징계소명, 형사고소·고발에 따른 수사,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형태		예산 직접 집행	
절차		기관 내 단계별 진행(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징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지원	추천 가능(경상남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민사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심급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 ※ 고의·중과실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거쳐야 함	
	손해배상	미보장	
	변호사 선임지원	추천 가능 (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또는 정부법무공단)	
형사	무죄	기소전 방어비용	불복 절차별 500만 원 한도
		기소후 소송비용	미보장
	유죄		
	변호사 선임지원		추천 가능 (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또는 정부법무공단)

- ▶ **(목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징계 등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
 - ▶ **(적용범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전반
 - ▶ **(지원체계)**
 - **적극행정 책임관** :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집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지원 전반을 관리
 - **적극행정위원회** : 지원여부, 지원시기, 범위와 방법 등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심의*·의결
 - 사건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여부 심의·의결 가능
- *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지원내용)**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소·고발 및 민·형사상 책임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고소·고발 등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민사상 책임 소송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징계등의 요구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원절차)**

절차	내용
신청 (적극행정 공무원)	❖ 지원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필요서류를 제출 ① 지원 신청서 ② 징계, 소송 등과 관련된 서류 - (징계절차 소명)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 (소송 등 지원)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③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④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⑤ 기타 적극행정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지원신청 접수·안내 적극행정 책임관	❖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 해야 함 -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대장에 기록 하고 관리 해야 함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 적극행정 사실관계	❖ 적극행정 책임관이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 -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절차	내용
확인 등 적극행정 책임관 ↓ 감사부서의 장	여부 를 적극행정책임관에게 통보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다만, 소송 등에 관해 신청 을 접수한 때에는 적극행정책임관은 이를 즉시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을 요청해야 함
위원회 상정·심의	❖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상정 -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상정 ❖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지원·집행 적극행정책임관 ↓ 적극행정공무원	❖ 적극행정책임관은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신속하게 집행 ❖ 지원받은 공무원은 14일 이내에 선임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변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 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 적극행정공무원이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여야 함
보고	❖ 적극행정공무원은 매 3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다만, 사안에 따라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 가능

- ▶ **(지원결정 취소 및 반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결정 취소 가능
- 이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함
 -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제도**를 통해 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함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소통 강화

□ 도교육청 누리집 「적극행정」 코너 활성화

○ 우리교육청 누리집 > 민원·참여 > 「적극행정」 코너 안내

- 구성 내용

- . (제도 소개) 적극행정의 정의·유형 추진 방안 관련 종합 안내
- . (우수공무원 도민 추천) 도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온라인 도민 추천 창구 운영
- . (소극행정 신고)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 형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와 연계 서비스 지원
- . (적극행정 자료실) 적극행정 교육자료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발 결과 홍보 및 홍보콘텐츠 안내

□ 적극행정 도민 추천 사례 관리 및 점검

○ 도교육청 누리집 「적극행정」 관리자가 도민 추천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처리

적극행정 도민추천제 개념

- (개요) 도민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정책을 추천하는 창구
 - (추천기간/방법) 상시 추천 / 온라인(도교육청 누리집 민원·참여 > 적극행정)
 - (추천대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정책
 - ※ 통상적인 업무수행 및 친절 사례 제외, 추천자와 당사자가 사적 이해관계 있을 시 제외
 - ※ 절차 개선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일반 도민이 혜택을 받아 추천한 사례로 한정
- (처리절차) 추천접수 → 접수 내용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 → 사실관계 확인(우수사례 제출 여부 등) → 우수공무원 선발심사 → 결과 통보
- (활용) 사실관계 확인 후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제출(추천 당사자가 제출 여부 결정), 1차 예산 심사 시 '도민 추천' 사례로 가점부여

□ '도민 적극행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 (운영 목적) 우리교육청과 교육수요자·일반 도민을 잇는 가교로서 '도민 적극행정모니터단' 구성·운영
- (운영 기간) 2026. 7. ~ 2027. 6.
- 구성 및 운영 방식
 - (구성) 주요 현안 관련 교육수요자 및 기관 업무에 평소 관심도가 높은 일반 도민 등 총 50명 내외 구성(2026. 7월)
 - ※ 대표성 확보를 위해 연령·성별·지역·직업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되, 생생한 여론·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참여는 최소화
 - (운영) SNS 소통 채널(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개설하여 상시 운영
 - (역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 성과를 도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통·확산 창구로서 기능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 2차 예선 심사 시 의견 제출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확산 및 홍보 활동 등
 -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의견 제시
- (기대 효과)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및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
 - ※ 세부내용은 2026년 도민 적극행정모니터단 공모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민신청제 개요

- (목적) 국민이 행정기관 등에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원 또는 감사기구 장의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와주는 제도

☀ **민원과의 차이** 행정기관 등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대책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 등에 대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일반 민원과는 그 취지와 활용 가능한 수단에서 차이가 있음

- (운영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신청요건) 신청 대상에 해당 되면서 예외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사안

신청 대상	+	제외 대상
➤ 신청 대상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 可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의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		➤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종결 처리 可 ☒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판결·재결·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제3항 참조

- (운영절차)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원익위 검토 후, 소관기관 배정
 -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신청 처리

□ 국민신청제 운영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국 민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개인, 법인, 단체)
	국민 신문고 (적극행정 신청창구)	신청요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u>반려된 사안</u> ❖ <u>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의 거부</u>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 등
		신청방법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청창구'를 통해 신청 ❖신청 시 기존 거부 민원 또는 불채택 제안 첨부
② 처리	권익위	1차검토 기관배정	❖권익위에서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 및 <u>신청요건</u> 등 검토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u>의견제시</u> ❖ <u>소관기관에 배정</u> (다부처 지정, 소관기관 정정 배정 등)
	적극행정 담당부서	종결여부 2차 판단	❖신청 내용, 요건 등 검토 후 종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u>종결처리 가능</u> ❖소관이 아닌 경우 <u>소관변경 신청</u> (→권익위) ❖ <u>처리부서를 지정</u> 하여 신청 내용 전달
	처리부서	처리 시 유의사항	❖기존에 해결을 신청했던 사안이므로,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u>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u> 하여 자문을 구해야 함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지침 제14조제2항)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지침 제14조제3항)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사유 통지 ❖종결 처리하는 경우 사유 통지
	적극행정 담당부서	관리사항	❖처리부서의 접수·처리현황 및 이행상황 관리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독려 ❖권익위에 <u>실적 제출</u>
③ 사후관리	권익위	사후관리	❖주기별 <u>실적 취합</u> 하여 전반적인 추진현황 관리 ❖운영상황을 <u>모니터링</u> 하여 지속적 제도 보완 및 <u>운영개선 권고</u>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확산

- 도교육청 누리집 참여마당 「적극행정」 코너 활성화
 - 적극행정 제도 및 우수사례 홍보 강화로 적극행정 의지 확산
- 우수공무원 선발 시기(6월, 12월)에 맞춰 적극행정 집중 홍보
 - 선발 전: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 선발 후: 적극행정 추진 독려를 위한 우수사례 소개 및 전파
 - 홍보채널: 각 기관 및 학교 누리집 알림판(빅배너 등), 업무포털 팝업 및 배너, 도교육청 누리집 및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 콘텐츠: 웹포스터, 카드뉴스, 적극행정 홍보 영상 등
- (기관 내부 홍보) 적극행정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 등을 구원성에게 공유
- (우수사례 관리) 우수사례 선정 이후 “확대 추진 가능” 여부 검토하여 우수사례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

□ 도교육청

- 2026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안내
 - 2026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안내(1월)
-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 적극행정 분야별 중점과제 발굴·추진(3~12월)
 -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실적 점검(12월)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
 -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연 2회 선발(6월/12월)
- 적극행정 온·오프라인 교육운영
 - 도교육청 전 직원 대상 직장교육 실시(9월)
 - 경남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등에 개설된 사이버 교육과정 이수(연중)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운영(연중 상시)
 - 소극행정 예방·점검(연중 상시)

□ 직속기관 및 도교육청 사업부서

- 인사상 인센티브(성과급, 교육훈련 우선선발, 전보가점, 표창) 부여 대상자로 선발 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선선발 또는 가점 부여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시행(1~12월)
- 적극행정 관련 교과 편성·운영(1~12월, 교육연수원)

□ 각급 학교(기관)

- (연중) 적극행정 실행 계획에 따른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실행
- (연중) 소속 직원 대상 직장교육 및 이러닝 교육

적극행정 과제(주요 내용)	주관(추진)부서	일정	비고
1.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관리	정책기획관 (본청 및 교육지원청)	3~12월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 참여와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즐거운 일터만들기, 지방공무원 학습기회 확대	정책기획관 학교혁신과 총무과	연중	
○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 전직원 대상 직장교육 실시(연간 1회 이상) - 이러닝교육 등	정책기획관 전 학교(기관)	연중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의견제시 활성화	정책기획관	연중	
2.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소극행정 엄정 조치 및 점검 강화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감사관	연중	
3.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연 2회 선발 - (상반기) 6월~9월, (하반기) 12월~2027. 3월	정책기획관	6월 12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성과급 및 최고등급, 교육훈련 우선선발 - 전보가점(2점) - 교육감상장 부여	유아특수교육과 초·중등교육과 총무과 경남교육연수원 등	연중	
○ 조직성과 평가 시 적극행정 노력도 반영	정책기획관	12월	
4.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정책기획관	연중	
○ 사전컨설팅 활성화	감사관	연중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감사관	연중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 공무원 책임보험 운영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총무과 정책기획관	연중	
5. 도민체감 성과 확산 및 소통 강화			
○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소통 강화 - 도교육청 누리집 적극행정 코너 활성화 - 적극행정 도민 추천 사례 관리 및 점검 - '도민 적극행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확대	정책기획관	연중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정책기획관	연중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확산	정책기획관	연중	

1 성과상여금 ·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인센티브 개요

- (개념)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부여
 -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 (대상) 성과상여금(6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 및 교원) 및 성과연봉(5급 상당 이상) 적용대상
- (규모)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에 따른 최고등급 인원의 5% 범위 내

□ 인센티브 부여 절차

-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성과급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선발기준 등 포함
- 성과평가 실시 및 성과평가 등급 확정(성과급운영위원회)
- 개인별 성과평가 등급 통보 및 성과급 지급
- 전담부서(정책기획관)에 결과 통보

2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 선발

□ 인센티브 개요

- (개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우선 선발 기회 부여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등
- (대상)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 선발요건*을 갖춘 모든 직급의 공무원
 - * 해당 연수 및 교육훈련의 기본적인 선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규모) 국내외 훈련 선발 가능 인원 범위 내
- (특징)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절차에만 적용되며, 교육부 교육훈련 인원 배정 및 선발과정에는 해당없음

□ 인센티브 부여 절차

- 도교육청 사업부서 및 직속기관에서는 2026년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선선발 세부 기준 마련·안내
 - * 해당자 우선 선발이 가능하도록 반영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통보 후 3년 이내에 본인이 신청, 신청 시 교육훈련 우선선발 해당자임을 명시
-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 세부 기준에 따라 우선선발(또는 가점 부여) 반영
- 전담부서(정책기획관)에 결과 통보

□ 기타사항

- 우선 선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법령의 범위 및 기본 선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최종 선발 가능

3 전보 가점 부여

□ 인센티브 개요

- (개념) 적극행정 최우수자로 선발된 일반직(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전보서열명부 평정점수 가점 2점 부여
 - *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 경력점(63점) + 가점(37점) + 감점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7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 (대상) 전보의 대상이 되는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 (규모) 제한 없음
- (특징) 전보서열명부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

□ 인센티브 부여 절차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통보 후 3년 이내에 본인이 전보희망서 제출, 제출 시 전보 가점 해당자임을 명시
 - * 매년 1.1., 7.1. 정기 전보에 해당
- 전보서열명부에 가점 부여(2점) 반영
- 전담부서(정책기획관)에 결과 통보

□ 기타사항

- 다른 가점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가점 부여
- 전보 가점 적용 외 다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함

적극행정 관련 각종 서식

[서식1]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 요청과제 심의 관련

- 서식1-① 의견제시 요청서
- 서식1-② 상정안건(의견제시) 적정성 검토서

[서식2] 의견제시 요청과제 서면회의 운영 관련

- 서식2-① 서면심의 안건 검토서
- 서식2-② 서면심의 안건 검토 결과
- 서식2-③ 최종 안건 심의서

[서식3]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의견제시 요청과제)

[서식4] 적극행정위원회 관리대장

[서식5] 사전컨설팅 관련(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의견서)

[서식6] 적극행정 면책 관련(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서식7] 소송 등 지원 관련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서식1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 요청과제 심의 관련

<서식1-①> 의견제시 요청(공무원→적극행정 전담부서)

의견제시 요청서

안전명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규정 적극 해석 ☐ 규정 미비 ☐ 기존관행 극복 ☐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대응 ☐ 기타 _____
적극행정 국민신청 해당 여부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요청 배경	☐ 검토배경 ○ ☐ 현황 및 문제점 ○ ☐ 관련 경과 ○
의견제시 요청사항	의견 제시 요청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쟁점사항	☐ 주요쟁점 및 처리방안 검토 ○ ※ 각 처리방안과 그에 대한 근거 명시 요청안전의 쟁점·고려사항, 갑설·을설 등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등
요청인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안전에 대한 요청인의 최종 의견 및 추진이 필요한 당위성 관련 부서·기관, 기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중 특기할 사항 ※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첨부서류	관련 규정 및 정책 국내·외 유사사례, 관련 판례·유권해석, 기타 통계자료 등

위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서식1-②> **상정안건 적정성 검토서**(적극행정 전담부서→적극행정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요청 안건 적정성 검토서

검토자 : 적극행정 책임관 ○ ○ ○

안건명			
의견제시 요청 유형		☐ 규정 적극 해석 ☐ 규정 공백 ☐ 기존관행 극복 ☐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대응 ☐ 기타	
법령 등 제개정 필요성		☐ 필요 ☐ 해당없음	
법령 등 제개정 전 조치 필요성		☐ 필요 ☐ 해당없음	
점검항목		해당 여부	판단이유/특이사항
공통	• 관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가?		
	• 소극행정, 책임회피 수단으로 요청한 사항은 아닌가?		
	• 민원해결을 위한 업무 회피성 사항은 아닌가?		
	• 이미 행해진 처분에 대한 의견제시는 아닌가?		
	•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가?		
	• 담당부서의 판단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결이 곤란한가?		
	• 업무해결을 위한 관련부서의 충분한 자체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관계법령 등 안건에 대해 책임있는 해석 권한이 있는가?		
	• 병합 가능한 안건은 없는가?		
先 조치 필요 안건	• 규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합리성을 저해하는가?		
	• 행정환경, 업무여건 등의 상황변경이 있는가?		
	• 법령개정 등 통상의 절차를 거칠 경우 국민일반의 피해나 국가 재정상 손실 발생 우려가 있는가?		
	• 특정단체, 개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		
	• 피해가 소규모이나 사후 보정 또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가?		

<종합 검토의견>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서식2-①>

서면심의 안전 검토서(위원→적극행정 전담부서)

1. 심의안전

안전번호 / 안전명	
주요 쟁점	

2. 심의의견

핵심심의내용	심의의견	
	가(可)	부(否)
- 안전관련 서면 검토결과, 동의 또는 부동의 하는 이유 - 관련부서에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질의 등) - 쟁점과 관련하여 위원들과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등		
※ 심의·의결내용 홈페이지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 심의의견은 안전 내용을 참고하여 可, 否 란에 “○”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 00. 00 .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2-②>

[의견제시] 서면심의 안전 검토 결과(적극행정 전담부서→위원)

1. 위원 검토의견

위원	핵심심의내용	심의의견	
		가(可)	부(否)
A위원	- 안전관련 서면 검토결과, 동의 또는 부동의 하는 이유 - 관련부서에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질의 등) - 쟁점과 관련하여 위원들과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등		
B위원			
C위원			

2. 위원 질의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결과

<서식2-③>

[의견제시] 최종 안전 심의서(위원→적극행정 전담부서)

1. 심의·의결 안전

안전번호	안 건 명

2. 심의사항

핵심심의내용	심의의견	
	가(可)	부(否)
※ 심의·의결내용 홈페이지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 심의의견은 안전 내용을 참고하여 可, 否 란에 “○”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종 심의의견(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0000. 00. 00 .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안건번호		심의일자	
안건명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가. 심의 결과

- (예시) 수출국 검역기관이나 대사관에서 동·식물검역증 사본에 대해 입증하고 인정 요청 시 검역증 사본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원안의결 / 찬성 0명, 수정 0명, 반대 0명)

나. 심의 내용

※ 법령개정 등 사후 조치들이 동반되는 등 심의과정 중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예시 1, 한시적 조치 필요 시

수출국 검역기관이나 대사관에서 동·식물검역증 사본에 대해 입증하고 인정 요청 시 검역증 사본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다만, 검역증 사본 인정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제적인 항공기 운항 제한상황 발생기간 동안(' 20.3.30~국제적 항공기 운항 제한 상황 종료 시)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예시 2, 선조치 시

00년 00월까지 「0000 규정」 제00호 개정을 전제로 수출국 검역기관이나 대사관에서 동·식물 검역증 사본에 대해 입증하고 인정 요청 시 검역증 사본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예시 3, 부가의견 등 추가 사항 있는 경우

다만, 사후 검역증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불이익 조치 등 처벌관련 제도마련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서식4

적극행정위원회 관리대장

회의 목록 대장

회차	신청자	개최 일	회의 방식	안건명	심의 결과	심의 주요내용 (후속조치 등)	심의안건 추진현황 (후속조치 처리내역)	공개여부
00	0000과	00-00 -00	대면 서면		수용 불수용			공개 비공개

작성 방법

- 회의방식 : 서면, 대면, 온라인 등 기재
- 심의결과 : 수용, 불수용, 반려, 취하 등 기재
- 심의 주요내용 : 심의 주요내용(후속조치 등 이행 이행상황 관리중인 사항 포함)을 간략히 기재
- 심의안건 추진현황 :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 조치상황, 그 외 심의안건 추진상황 관리
- 공개여부 : 심의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등)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20. 5. 7. 훈163>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기관(부서)명 :

년 월 일

☐ 건 명 :

1. 관 련 법 령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 ○ ※ 안건에 대한 쟁점, 요청사유와 배경,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등 작성
4. 기타 (관련 부서 의견 등)
○ ○

※ 관련 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2020. 5. 7. 훈163>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 접수번호 :

☐ 건 명 :

1. 일반현황
○ ○
2. 관련근거
○ ○
3. 검토 의견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 면책신청 안내

경상남도교육청 주관 자체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감사가 종료된 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신청서: [별지 제6호2서식]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감사주관 책임자 : 직.성명 (인)

감 사 기 관 명		감사 기간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안)			
비 위 내 용			
신 청 사 유			
검 토 의 견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심사 대상자			심사결과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위 인수자 소속 직 성 명 (인)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계의결 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사유		
구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기타 제도 등 지원 여부		☐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 교원 또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지원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illegible]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illegible]